

# 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8. 19.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8. 8. 21.  
 다. 상정일자 : 2008. 8. 28.(제1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징수팀장 박문수)

### 가. 제안사유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4(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신청)」이 법률 제6655호(2002.2.4)로 폐지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구법(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제4항제2호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수수료 징수 규정이 삭제되므로 관련 조례 정비
- 비료생산(수입업)등록사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됨에 따라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신설코자함

### 나. 주요내용

- 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요율표 제1호 마목 10)의 도시계획도열람을 삭제하고
- 제2호 라목(농수산관계)에 6)비료생산업 등록을 30,000원, 7)비료수입업 신고를 20,000원으로 수수료 징수규정 신설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국토이용관리법이 2002년 2월 4일 폐지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계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 제2항2호에 규정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수수료 150원의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제1항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비료관리법 제11조 제5항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비료관리법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항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3항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 수입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북도 제증명 수수료 산정요율표의 규정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6월 27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 4. 질의답변 요지

“없 음”

#### 5. 소수의견

“없 음”

#### 6. 토론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